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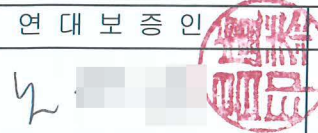

보 증

제 1조 피보증채무·보증채무의 이행

- ① 보증인은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,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.
  - 1.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
  - 2.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
  - 3.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
  - 4.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
  - 5.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
  - 6.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
- ② 제 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대부거래표준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2조 보증한도

보증한도(원본, 이자, 지연배상금,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)는 아래금액으로 한다.

연 대 보 증 인	보 증 한 도	변경된 보증한도
	금 이의사 200원 금 원	금 원 금 원
연 대 보 증 인 (추 가 입 보)	보 증 한 도	변경된 보증한도
	금 이의사 1천원 금 원	금 원 금 원

제 3조 상계의 제한

보증인은 당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있기 전에는,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기타의 모든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당사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
제 4조 담보·보증 등의 변경·해지·해제

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,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,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·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는, 거래상 필요에 따라, 당사는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·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.

제 5조 담보·보증약정과 관계

-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당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무적 적으로 적용된다.
-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당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인이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